

제 증명 발급 규정

제정 2018년 8월 27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신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 라 함)의 졸업생 , 재적생 등의 학력을 증명하기 위한 제반 증명서 발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급) 제 증명의 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청이나 본교의 필요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제3조(종류) 발급가능한 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과정별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위증명서를 수여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졸업증명서 (단, 졸업이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
2. 재학생 중 당해 학기의 등록을 필한 사실을 증명하는 재학증명서
3. 본인이 신청한 과목의 성적 사실을 증명하는 성적증명서
4. 각 과정별 졸업학점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수료증명서
5. 2년제 혹은 3년제(석·박사통합과정은 4년) 과정별 최종 학기까지의 등록을 필하고 최종학기까지의 취득학점이 졸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졸업예정증명서
7. 본교의 학적 사실을 증명하는 제적증명서
8. 당해 연도의 신입생 전형에 합격하여 소정의 등록을 필한 사실을 증명하는 합격증명서(등록일 부터 입학일 전까지)
9. 매학기 등록을 필한 후 등록을 증명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제4조(수수료) 제 증명서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